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918 발의연월일: 2020. 9. 15.

발 의 자:임이자·김영식·권명호

박대수 · 이종성 · 이만희

태영호 • 윤창현 • 서일준

송언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각각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하여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육아휴직 사용기간의 분할이 제한적이어서 실질적 돌봄 수 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초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의 양육을 넓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대상 자녀 연령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를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로 확대하고, 육아휴직을 2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육아로 인한 근로자의 경력 단절을 최소화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

임(안 제19조의2, 제19조의4 및 제19조의5).

법률 제 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 본문 중 "8세"를 "12세"로, "2학년"을 "6학년"으로 한다.

제19조의4제1항 중 "1회"를 "2회"로 한다.

제19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8세"를 "12세"로, "2학년"을 "6학 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였거나 이 법시행 당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적용한다.

제3조(육아휴직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휴직하였거나 이 법 시행 당시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 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u>8세</u>	① <u>12</u> ****
이하 또는 초등학교 <u>2학년</u> 이	<u>6</u> 학년
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	
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	
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	
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
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u>1회</u> 에 한	2 <u>খ</u>
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의5(육아지원을 위한 그	제19조의5(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 ① 사업주는 만 <u>8</u>	밖의 조치) ① <u>12</u>
<u>세</u> 이하 또는 초등학교 <u>2학년</u>	<u>세</u> <u>6</u> 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	

자의	육여	아를	지원히	-フ]	위히	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구에	해
당하는	<u> </u>	조치를	는 하도	록	노력	하
여야	한다	7.				

- 1. ~ 4. (생 략)
- ②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